

서울서초지사 청년(체험형)인턴 채용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부과, 산재근로자 보상, 의료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함께 할 인재를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6월 11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장

1. 채용인원

□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업무내용
청년(체험형)인턴 (기간제근로자)	1 명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	고용·산재보험 적용 조사 및 가입홍보 등 가입지원 관련 업무

※ 기간제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없이 고용관계 소멸

2.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

□ 응시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 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군 전역자(사회복무요원 포함)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우리공단 청년(체험형)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근로조건

구 분	주요내용
채용분야	· 청년(체험형)인턴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 '25. 7. 1.(화) ~ '25. 12. 31.(수), 6개월
근무시간	· 주 5일 [월 ~ 금, 13:00 ~ 17:30 (1일 4시간 근무,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30분 포함)]
근무장소	·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 가입지원부
수행업무	· 고용·산재보험 적용 조사 및 가입홍보 등 가입지원 관련 업무
보수수준	· 1,194,000원 (기본급최대 포함, 주 20시간 기준)
복무규정 등	·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복무 등 운영세칙」 등 공단 관련 규정 적용

3. 전형일정 및 전형별 주요내용

□ 전형별 주요내용

전형단계	일정 및 주요내용
원서접수	• 접수기간: '25. 6. 11.(수) ~ '25. 6. 18.(수) 18:00: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마감 당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 recruit_2011@comwel.or.kr •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별첨 서식) ※ 반드시 지정 서식을 사용하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이메일 접수 시 제목 및 첨부파일명은 “체험형인턴(지원자명)”으로 접수
서류전형	• 선발방법: 응시원서 기준 정량평가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최하위 점수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합격자발표: '25. 6. 20.(금) 13:00
면접전형 서류검증	• 일시: '25. 6. 23.(월) •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면접방식: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 • 평가요소: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등) 및 직무수행능력(도전정신, 전문성, 직업윤리, 자기개발 등) •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평균점수(가점 포함) 5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면접시험 평균점수 50점 미만 득점 시, 부적격자로 보아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항목별 고득점자 ⇒ 동순위자 면접전형 재실시 • 증빙서류 제출: 서류전형 평가·우대사항 관련 서류(면접시험 당일 직접 제출) ※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취소 및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 최종 합격자발표: '25. 6. 25.(수) 13:00
임용후보자 등록	• 임용후보자 등록: '25. 6. 25.(수) 13:00 ~ '25. 6. 27.(금) 18:00 • 제출서류: 임용후보등록 관련 서류 ※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 임용후보 미등록자,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 부적격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임용예정일: '25. 7. 1.(화) ※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후보순위에 따라 후보합격자 임용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별 세부사항

□ 서류전형

항목	주요내용		
자격사항 (100점)	전산자격(35점)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스(워드프로세스1급 포함)	
	전문자격(35점)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산회계운용사 3급 이상, 투자자산운용사, 펀드투자상담사(펀드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한국사자격(10점)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국어능력(20점)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준3급 이상	
	※ 반드시 위 기재된 자격사항만 기재하고, 각 평가항목 내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및 각 평가항목 내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최종합격하여 자격번호(또는 면허번호)가 부여된 자격증(면허)만 인정하며,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		
우대사항 (10점)	항목	점수	우대항목
	취업지원 대상자	10점	·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5점	·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5점	·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본인
		3점	·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또는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장애인	5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5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생활보호 대상자	5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다문화가정 자녀	5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5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 여성	5점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의 사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연속하여 180일 이상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상태) · 경력단절기간 확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립준비 청년	5점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자립준비청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에 한함
※ 상기 항목 중 두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구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면접전형

항목	주요내용
면접전형 (10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의사소통능력 · 대인관계능력 · 도전정신 · 전문성 · 직업윤리 · 자기개발 등 평가

□ 사회형평요소 우대가점(10점)

항목	점수	우대항목
취업지원 대상자	10점	·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5점	·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5. 채용비위 신고 및 피해자 구제

항목	주요내용
채용 이의신청	·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간 ·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붙임 서식) 작성 · 이의신청 예외대상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채용비위 신고 등	· 채용비위 상설 신고센터 - (외부) 헬프라인 레드휘슬(http://www.redwhistle.org) - (내부) 업무포털 Clean COMWEL(비윤리적행위 신고센터-채용비리 익명신고센터) · 채용비위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 기회 제약을 받은 자 · 피해자 구제: 피해사실 인지 후 즉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구제절차 진행 -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기회 부여

6. 응시자 유의사항

-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및 면접전형, 증빙서류 검증과정에서 본인 이외 타인의 대리작성 및 대리시험,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입사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모든 작성을 완료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시험 시 입실시간 엄수 및 (기간만료 전)신분증* 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 전),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표기)
 - ※ 전자신분증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 제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면접시험 시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를 제공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자료 일체를 면접전형 당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 서류검증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에도 서류검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패행위자 재취업 여부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임용일 이후에도 임용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공단이 지정한 일정과 장소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 전 과정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채용 이의신청(붙임 「채용 이의신청 양식」 작성)이 가능합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나 질의사항,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답변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작성) 할 수 있고(본 채용은 온라인으로 응시원서 등을 접수하므로 동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80일 경과 후 불합격자 제출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채용비위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자 포함)는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단 응시자격이 제한되오니 반드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 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 이상이어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사포기·결격사유로 인해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예비 합격자를 선발하고 개별 공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전 직장의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공단 내부규정 등에 따라 임용 이후에는 이사장의 허가 없이 겸직 및 영리활동(사업자등록 등)이 불가합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 채용담당자(☎02-6250-7248)

2025. 6. 11.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장

[붙임 1] 임용의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4.12.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6. 4. 5., 개정 2018. 5. 11., 2020. 7. 2., 2025. 2. 21.>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6의4. 공단 입사 이전 또는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9.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임 2] 채용 이의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직원 채용 이의신청서			
성 명		채용분야	
이메일		연 락 처	
이의신청 내용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		
년 월 일 신청인 (인)			

※ 신청 시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바라며,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바랍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 질의사항, 타법령에 접촉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붙임 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붙임 4]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내용

장애유형(장애정도)			면접시험
지체 장애	상지 지체	공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장애정도가 심한 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하지지체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뇌병변 장애	공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장애정도가 심한 자		· 개별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지원
시각 장애	공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관련서식 점자 지원 · 음성지원 컴퓨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관련서식 점자 지원 · 음성지원 컴퓨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관련서식 점자 지원 · 음성지원 컴퓨터 · 공통 편의지원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시력이 0.3이하인 사람	
	청각 장애	공통	
특수 및 중복장애 / 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 검토 후 안내	
기타	임산부		· 낮낮이 전용책상 · 전담도우미 지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해당 여부 선택

※ 증빙자료(의사진단서 등)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편의지원 요청내용 검토 후 편의제공 여부 별도안내